##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69

발의연월일: 2025. 3. 10.

발 의 자:용혜인·윤종오·윤호중

민형배ㆍ허 영ㆍ이수진

복기왕 · 한창민 · 김정호

김남희 · 김영배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제사업은 협동조합연합회가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하거나 협동조합연합회가 회원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개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경우 공제사업이 가능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도 연합회가 회원사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외의 경우 협동조합 공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1 년 기준 전 세계 보험시장에서 협동조합 공제의 시장 점유율은 26.2%에 이르며, 국제협동조합보험연합회는 전 세계 60개국에 회원사를 두고 있음.

협동조합 공제는 일상적 위험을 대비하고 서로 돕는다는 정신에 입각한 상호부조사업으로 협동조합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상법」과 「민법」에 따른 조직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가 가능하나 협동조합은 이를 제한하고 있어 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경영의 효율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 총회 의결을 통해합병·분할 등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규모가 큰 협동조합의 경우 현실적으로 전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오히려 합병·분할 필요성이 있는 규모가 큰 협동조합이 이 제도를활용할 수 있도록 총회 의결 특례 등의 방안이 필요함.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관계 중앙부처가 인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인가 심사 시 관련 근거가 불명확한 내 용(부처 및 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을 이유로 들어 인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이에 ▲협동조합 공제사업 허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대상 확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의결권·선거권 행사 ▲투표를 통해 합병·분할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총회 의결 특례 적용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통지 시 이유 및 근거 명시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 도록 함(안 제23조의2).
- 나. 합병과 분할, 해산 등에 관해서는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총회 의결의 특례를 둠(안 제31조의2).
- 다.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을 허용하고, 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의 범위를 회원의 조합원까지 확대함(안 제45조의2, 제80조의2제1항).
- 라. 설립인가를 신청한 사회적협동조합을 인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이유 및 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함(안 제85조제4항).
- 마. 사회적협동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금액을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함(안 제89조제4항).

#### 법률 제 호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협동조합연합회등"을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출자금은 협동조합"을 "출자금은 총회의 의결 없이 협동조합"으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우선출자 총액의 100분의 30"을 "우선출자 총액과 납입출자금 총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 ①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는 조합원(이사장 및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양식과 참 고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가 끝난 날부터 3개 월간 주사무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게 하고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 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조합원 확인절차 등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출자금과 채권의 상계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협동조합의 공제사업) ①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조합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조합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이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 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요건 및 절차 등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6조 전단 중 "제22조"를 "제22조, 제23조의2"로 한다.

제80조의2의 제목 "(공제사업)"을 "(연합회의 공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회원들의"를 "회원 및 그 회원의 조합원(이하 "공제사업대상자"라 한다)들의"로, "회원 간"을 "공제사업대상자 간"으로, "회원들이"를 "공제사업대상자들이"로, "공제료를 낸 회원"을 "공제료를 낸 공제사업대상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회원의 채무"를 "공제사업대상자의 채무"로 한다.

제81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5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정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금액은 탈퇴한 회계연 도 말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91조 전단 중 "제22조까지"를 "제22조까지, 제23조의2"로 한다.

제92조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 전단 중 "제22조"를 "제22조, 제23조의2"로 한다.

제115조의5제1항 전단 중 "제22조"를 "제22조, 제23조의2"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	④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
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합회등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출자 및 책임) ① ~ ③	제22조(출자 및 책임)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협동조합에 납입할 <u>출자금</u>	④ <u>출</u> 자금
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	은 총회의 의결 없이 협동조합-
계하지 못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우선출자) ① (생 략)	제22조의2(우선출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	②
의 금액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	
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의 <u>100분의 30</u> 을 초과할	<u>100분의 50</u>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조합원이 제2항에 따른 우	3
선출자에 참여할 경우, 조합원	

1인의 납입출자금 총액과 우선 출자 총액을 합한 금액은 협동 조합이 발행한 <u>우선출자 총액</u> 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 다.

④ ~ ⑥ (생 략) <신 설> \_\_\_\_\_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행사) ①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는 조합원(이사장 및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 9. (생 략) <신 설> 10. • 11. (생 략)

② (생략) <신 설>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주사무소에 비 치하여 열람하게 하고 총회, 대 의원총회 및 이사회가 끝난 날 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확인절차 등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 권 및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 9. (현행과 같음) 10. 출자금과 채권의 상계 11. • 12. (현행 제10호 및 제11 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 협 동조합의 합병 · 분할 또는 해 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 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 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방법, 그 밖에 투 <신 설>

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5조의2(협동조합의 공제사업)
①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상호부 조를 위한 공제사업(조합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조합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기 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 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 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u>④ 기획재정부장관이 60일 이</u> <u>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u>

제76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원 저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제80조의2(공제사업) ① 제80조제 제80조의2(연합회의 공제사업) ①

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7]
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등	통지
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단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	서리
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
우에는 해당 처리 기간을 말	<u>발한</u>
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
가를 한 것으로 본다.	
	오건
및 절차 등 인가에 필요한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제시	나업
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계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영할 수 있다.	
 베76조(준용규정)	
제22조,	제
 23조의2	

3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② ~ ⑥ (생 략)

제81조(사업의 이용) ① (생 략)

-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u>다</u>만,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 ③ (생 략)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 더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원 및 그
회원의 조합원(이하 "공제사업
<u>대상자"라 한다)들의</u>
공제사업대상자 간공제사
업대상자들이
공제
료를 낸 공제사업대상자
공제사업
대상자의 채무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1조(사업의 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서 삭제>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4
<u>o</u> ]

## <후단 신설>

 ⑤·⑥ (생 략)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

 정지) ① ~ ③ (생 략)

 <신 설>

제91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

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92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를 준

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경우 인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근거를 명시하여야
<u>한다.</u>
⑤·⑥ (현행과 같음)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
정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금액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사회적협동조합
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91조(준용규정)
<u>제22조까지</u> , 제23조의2
· 
,
제92조(준용규정)
<u>제4항</u>
I

ス	∥115조(준용규정) ① 사회적협동	제115조(준용규정) ①
	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2장	
	중 제17조, 제19조, 제21조, <u>제2</u>	
	<u>2조</u> , 제25조, 제28조제3항부터	제22조, 제23조의2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	
	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	
	1항,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62조	
	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	
	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	
	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	,
	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	
	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	
	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	
	로 보며, 제22조제2항 중"조합	
	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	
	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 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②·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5조의5(준용규정) ① 이종협 제115조의5(준용규정) ① -----동조합연합회 회원의 가입, 출 자 및 책임, 제명 등에 관하여 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 -----제22조, 제23조의2--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 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 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 0분의 40"으로 본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